

의안번호	2201850
의 퇴 인	최보운 의원
회 답 일	2024. 8. 1.
추 계 번호	24C2064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정하여 관련 행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원(연평균 1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장애인학대 예방의 날(안 제59조의22)	100	100	100	100	100	500	1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의11(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)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둠 ※(현행법)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두도록 규정(고려사항에 대한 규정 없음)	의무규정
2	안 제59조의20(장애인 학대예방의 날)	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,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9조의11(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9조의20(장애인 학대예방의 날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59조의11에 따라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할 경우 해당 기관 수가 늘어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해당 기관의 추가 설치 여부 및 소요 재정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
 -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기관 1개소 및 지역기관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
 - 시·도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없으며, 경기도와 충청북도에 각 2개소가 설치·운영 중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정하는 경우, 국가 등의 행사 개최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현재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, 해당 행사비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
 -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날로,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에 홍보위탁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를 수행하고 있음
 - －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3년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에 소요한 비용은 약 8,300만원이며, 2024년에는 약 9,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
 - 본 추계서는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비를 참고하여, 매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－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홍보·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
- 추계결과,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정하여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원(연평균 1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(안 제59조의22)	100	100	100	100	100	500	1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